용인시골프협회 정관

용인시골프협회 정관

제정 2017. 03. 02.

개정 2020. 11. 24.

개정 2021. 05. 25.

개정 2022. 11. 24.

개정 2023. 02. 03.

개정 2024. 02. 28.

개정 2025. 02. 28.

1. 제 1 장 총 칙

-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단체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용인시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용인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이다.
 - ② 이 단체의 명칭은 '용인시골프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Yongin City Golf Assosiation(약칭 YIGA)이라 한다.
- 제2조(목적) ① '용인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용인시 및 대 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① 협회의 사무소는 용인시에 둔다.
-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 1. 용인시 내 각종 골프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 2. 경기도체육회와 용인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및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 3. 용인시 골프선수지도자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 4. 용인시 골프동호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 5. 용인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 6. 용인시 골프클럽 및 골프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7. 용인시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 8. 용인시 골프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 9.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10. 그 밖에 용인시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협회 제공이익의 수혜자) ①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성별 또는 그 밖에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제 2 장 조 직

제6조(조직) ① 협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용인시에서 골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16인 이상으로 구성된 클럽 또는 동호회를 말한다. 단, 활동 중 구성원이 16인 이하로 될 때도 기존 회원의 동의가 있다면 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5.02.28.)
- 2. 별도로 인가를 받아 구 단위 클럽 또는 동호회를 설치 결성하여 가입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02.28.)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회원단체'는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 회원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 2. '준회원단체'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 3. '인정단체'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③ 제2항의 구분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은 회원단체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용인시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협회는 용인시체육회 정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회비를 용인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내야 한다.
 - ③ 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4항과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협회 회원단체의 협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용인시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 ② 협회 회원은 는 정관 제41조 제2항에 따른 회비를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내야 한다.
-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협회는 회원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협회가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용인시체육회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 1. 협회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
 - 2. 60일 이상의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 3. 협회 및 협회 회원단체와의 분쟁
 - 4. 해당 회원단체 내의 각종 분쟁
 - 5. 재정악화 등 그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 ② 협회가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단체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 ④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회원단체는 협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⑥ 용인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협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용인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6조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되려는 단체는 협회에 사무국을 통해 회원기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용인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의2(회원단체의 강등·제명) ① 협회의 정회원단체 또는 준회원단체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협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회는 용인시체육회에 미리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협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이 정관 이외에 협회의 회원단체에 대한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용인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제 3 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협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될 때는 대의원 자격을 잃으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 4. 임원의 선임(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복수의 감사가 연명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중 연장자 또는 감사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4.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안건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⑦ 총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 회의 시행이 어려울 때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와 같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제 4 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된다.

-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시무국장의 임면동의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강등 및 제명
 - 9. 그 밖의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 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원격통신 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 5 장 임 원

제22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3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명(회계감사, 행정감사)
- ② 협회의 임원은 협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사의 수의 상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 ②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 1. 협회의 정회원단체의 장
 - 2. 협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선거인 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 1. 단체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 ④ 협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시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재적수가 15명 미만이 되거나, 임기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⑤ 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7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회장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상임 임원 또는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 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장은 그다음 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 2.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3. 후보자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 ⑩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를 대표할 수 있다.

-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가 주최 하거나 주무부처와 합의한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 ①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때는 그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2. 다수 득표자가 동수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액 및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 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와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와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 ② 협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③ 용인시체육회는 협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 회장 선거 관리 등의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지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 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경기도체육회의 용인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5.02.28.)
 - ③ 회장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 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 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 제26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 ③ 협회는 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2.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3. 교육계 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 수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⑤ 감시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과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
 -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회장은 경기도골프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기도골프협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⑧ 경기도골프협회가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회장의 인준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될 때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⑩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용인시 대표로 선발된 대표선수는 선수 이사로 선임한다.(신설 2024.02.28.)
 - ① 선수 이사의 선임은 반드시 대표선수 선발전을 통해서만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25.02.28.)
 - 1. 선수 이사가 당해연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서 우승한 경우 선수 이사 전원의 임기는 연임 횟수와 관계없이 임기가 연장된다. 이 경우에도 선수 이사의 궐위를 대비하여 대표선수 선발전을 통해 후보 2명을 선발한다.
 - 2. 선수 이사가 당해연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서 2등 또는 3등으로 입상한 경우 선수 이사 중 성적 우수자 3인의 임기는 연임 횟수와 관계없이 임기가 연장되며 선수 이사 중 4위를 기록한 이사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고 대표선수 선발전을 통해 선임한다.
 - 3. 선수 이사가 당해연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서 우승 또는 입상하지 못한 경우 선수 이사 전원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고 대표선수 선발전을 통해 선임한다.
 - 4. 대표선수 선발전을 통해 선수 이사를 포함하여 총 6명을 선발하며, 최종 4명을 선수 이사로 선임하며, 후보선수 2명 중 선수 이사 궐위 시 선발전 성적 우수자가

선수 이사로 선임된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임원이 협회 또는 회원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임원이 협회(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용인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⑦ 임원이 협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협회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중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면 임기와 연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중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거나 대표선수로 선발된 당연직 임원이면 임기와 연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02.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바로 다음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 ①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 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단, 사무국장은 해당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한다.
-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⑩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때도 포함한다.)
- ①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 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 ② 당연직 선수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발된 날부터 차기 대표선수 선발일까지로 한다. 대회 이전에 궐위가 발생하면 후보선수 중에서 보선한다. (신설 2024.02.28.)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 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 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6. 용인시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협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 7. 용인시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협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 임원 선거와 관련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과거에 허위로 작성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이 있었던 사람 신설 2025.02.28.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때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때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 1. 제27조 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 2.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 3. 협회의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③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용인시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31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6. 제 6 장 회원단체

- 제32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협회 회원단체는 지역 내 골프종목의 팀, 클럽(동호회 등)단체로 조직한다.
 - ② 협회 회원단체의 조직, 운영 등은 용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33조(회원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협회 회원단체의 회장, 부회장, 시무국장은 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협회는 용인시체육회에 인준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② 협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③ 협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해당 회원단체 및 다른 회원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 제34조(읍·면·동골프협회의 조직 및 구성) ① 협회의 회원단체인 읍·면·동골프협회는 읍·면·동골프협회의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읍·면·동골프협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 를 둘 수 있다.
- ③ 읍·면·동골프협회의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조직, 운영 등은 이 정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읍·면·동골프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읍·면·동골프협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읍·면·동골프협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7. 제 7 장 각종위원회

-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은 협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나 재직자가 재적 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나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협회, 협회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 2. 협회, 협회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 3.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 2. 스포츠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2.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⑤ 이 밖에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가 설치하는 제36조 및 제37조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3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6조 및 제37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3.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4. 그 밖에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8. 제 8 장 재산 및 회계

-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부동산
 - 3. 기금
 -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②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 금품의 사용 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하지 않을 때는 협회가 정한다.
- 제40조(재원) ①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협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원단체의 회비
 - 2. 이사회의 회비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부금 및 찬조금
 - 5. 사업수익금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7.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 8. 그 밖의 수입금
- ② 제1항 1호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 1. 정회원단체의 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 2. 준회원단체의 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 3. 인정단체의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 4. 관리단체의 회비는 면제한다.

(신설 2024.02.28)

- ③ 제1항 2호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 1. 회장의 이사회의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 2. 부회장의 이사회의 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 3. 이사의 이사회의 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 4. 감사와 일부 임원(전무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이사회비는 면제한다.(신설 2024.02.28) 제41조(잉여금의 처리) ①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용인시체육회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용인시의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①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협회 및 협회 회원단체의 임직원
 - 2. 협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협회 및 협회 회원단체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제4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용인시체육회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용인시체육회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용인시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6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는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 ② 협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협회의 회계 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으로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47조(용인시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용인시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협회 및 협회 회원단체는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용인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및 협회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을 조사·감사할 수 있다.
 - ③ 협회 및 협회 회원단체가 용인시육회의 정관, 각종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용인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용인시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용인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④ 협회 및 협회 회원단체는 주무 부처 담당 및 회장이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용인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용인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용인시체육회의 '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9. 제 9 장 사무국

제48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⑤ 사무국장과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중시하지 못하며, 화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사무국장과 직원에게 적정한 월 보수 또는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02.28.)
- 제49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10. 제 10 장 보 칙

- 제50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용인시체육회장의 정회원단체 인주 취소로 해산한다.
 -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용인시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용인시장의 허가를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 제51조(정관의 제정·개정) ① 협회는 용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②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용인시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용인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용인시체육회는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협회는 정관을 개정하고 용인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용인시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 제52조(규정의 제정·개정) ① 협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한다.
 - ② 협회는 정관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53조(규정의 해석 등) ① 용인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이하 '종목단체 규정' 이라 한다.)은 이 정관에 우선하며, 이 정관과 종목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종목단체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② 협회가 용인시체육회 정관, 종목단체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4조(제한사항) 협회가 용인시체육회 정관, 각종 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용인시체육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1. 용인시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 2.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용인시체육회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 3. 용인시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 4. 용인시체육회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 5. 용인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 6.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용인시체육회의 재정 지원
 -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 8. 국제대회 유치
- 제55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게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 결과와 그 밖에 협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11. 부 칙(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용인시체육회 승인을 거쳐, 용인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의 승계 등) 용인시체육회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이전 '용인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을 포괄 승계하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전 '용인시체육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전 용인시체육회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1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 하고 임기의 만료일은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임기 마지막 날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구)용인시골프협회가 행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④ 협회 임원(당연직 공무원이나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의 연임 횟수에는 (구)용인시경기단체와 (구)용인시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12. 부 칙(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용인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9조 제10항 및 제11항 개정정관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원이 되려는 자의 연임 횟수 산정에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전 누적된 임원 재임 횟수 및 연임 횟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